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의3 서식]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일·생활균형 시스템) 참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기업규모 [ ] 우선지원대상기업 [ ] 중견기업 [ ] 대규모기업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폰:	담당자 FAX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업종명	업종코드	
	우대사항 [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예비인증기업 포함) [ ] 일터혁신컨설팅,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근무혁신 우수기업) 또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 ]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 ]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청·지청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기업		
사업계획	시스템 활용 목적 [ ]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출퇴근), [ ] 근로시간 단축, [ ] 시간 단위 연차, [ ] 기타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		
	유연근무 등 활용 방안 ※ 시스템 활용 방법 및 재택·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혹은 시간 단위 연차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 시행방법, 활용인원 등 기재 ※ 필요시 별지에 기재		
	소규모기업 우대사항 신청 여부 [ ] 예, [ ] 아니오 ※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시스템 사용료의 100%, 연 180만원 한도로 지원 ※ 사용료: 임대 장비,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월 이용료 납부하여 사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3. 시스템 구축 견적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또는 수입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공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사업주 확인서**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대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업종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형업종:56211, 무도유형주점업:56212, 기타주점업:56219,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91249, 무도장운영업:91291)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점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의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의 승인, 불승인 및 지원액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대표자): (직인)

**작성방법**

□ 사업장 항목

- ①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주가 4대보험공단에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 작성
- ②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주소**: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작성
- ③ **심사우대사항**: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심사점수 5점 가점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예비인증기업 포함)
  - \*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관 인증기업, 산학협력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청·지청장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한 기업
  -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사업’ 진단 참여 기업
  -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이상 도입하고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21년~`23년)

□ 사업 계획 항목

- 시스템 활용 목적: 시스템 활용 목적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칸에 기입(√), 활용 목적이 2개 이상일 경우 해당 칸에 모두 기입(√)
  - 1) 유연근무 : 재택·원격·선택근무, 시차출퇴근을 활용인 경우
  - 2) 근로시간 단축 : 소정근로시간 등 단축, 임시기, 육아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인 경우
  - 3) 시간단위 연차 : 반반차 등 시간 단위 연차를 활용하는 경우
  - 4)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 :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휴가 등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 유연근무 등 활용 방안: 유연근무, 혹은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 등 활용 인원 및 활용 방법, 시스템 활용 방법 등 기재
- 소규모기업 우대사항 신청 여부: 사업 참여 신청일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30인 미만인 기업이면서 월 이용료 등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임대,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 신청 가능